

국가 간 치과위생사의 업무 및 역량 비교: 한국, 미국, 캐나다를 중심으로

김애옥¹ · 조민정^{2*}

¹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예방치과학교실 연구원, ²광주보건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A comparison of dental hygienists' legal duties among nations: Korea, USA and Canada

Aeok Kim¹, Minjung Cho^{2*}

¹Researcher, Dept. of Preventive and Public Health Dentistr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Dentistry

²Professor, Dept. of Dental Hygiene, Gwangju Health College

ABSTRACT Recently, the paradigm of oral care has been shifting from treatment to prevention. This thus urges a change in the dental hygienist's role to accommodate such a shif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the direction of change in dental hygienist's legal duties and their standardized capability by conducting a comparative analysis among Korean, Canadian, and U.S hygienists. The data used for the comparison was collected through academic papers, government publications, research reports, and related web sites. Comparing the practices in three countries, this study draws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the legal definition of a dental hygienist in Korea is similar to that in Canada and the U.S. However, the legal duties of dental hygienists in Korea are not specified in detail, and their duties are more limited than that in Canada and the U.S. Furthermore, Korea has no officially announced standardized capability to build proper dental hygienist capabilities. To overcome this limitation, it is suggested that Korea needs to modify acts specifying the legal duties of a dental hygienist, as well as announce and spread standardized capabilities that reflects that change in legal duties.

Keywords Dental hygienist, Legal tasks of dental hygienist, Dental hygiene competencies

Received on Feb 1, 2019. Revised on Mar 10, 2019. Accepted on Mar 16, 2019.

* Corresponding Author (E-mail: mijucho@ghu.ac.kr)

이 연구는 2016년도 광주보건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I. 서론

최근 국가경제 수준 향상과 인구 수명 연장 등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치과 진료의 패러다임이 치료중심에서 예방 및 관리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1]. 그러나 치료중심 업무에 종사하는 치과의사만으로는 임상과 지역사회에서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수준 높은 구강병 예방업무 수행 능력을 갖춘 치과위생사를 필요로 하고 있다[2]. 이는 소비자에게 적합한 구강건강관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진료협조에서 구강관리로 변화해야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법률상 규정된 치과위생사의 법적인 업무는 주로 진료 협조에 치중되어 있어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를 반영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의료기사법 시행령[3]에 따르면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진료협

조에 관한 내용은 명확하게 열거되어 있는 반면, 예방업무는 치석 등의 침착물의 제거와 불소도포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밖에' 라고 되어 있어 예방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임상현장에서는 치주낭 탐지를 포함하여 대상의 중재자, 관리자, 주도자의 역할 등 확장된 구강관리 업무수행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Dr. Fones가 구강병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치과위생사 제도를 도입한 취지[4]와도 맞지 않는다.

치과위생사의 역할 변화를 위한 또 하나의 선행과제는 구강관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치과위생사의 역량개발이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새로운 치과위생사의 역할에 부합하는 역량들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역량은 교육기관에서 치과위생사를 양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과 캐나다는 치과위생사의 직업적 책무가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으므로 치과위생사에게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역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치위생 교육기관에서도 치위생학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와 함께 치과위생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에 기반한 인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에 발맞추어 한국에서는 연구과제[5-8]를 통해 치과위생사의 역량들을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수행되었으나 아직까지 이 프로젝트의 결과가 명시적으로 공표되어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진료협조에서 구강관리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치과위생사의 정체성에 맞는 업무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이에 부합한 역량이 제시되어야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 및 미래가 원하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및 역량은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국외 사례와 국내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 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치과위생사의 법적인 업무와 역량 측면에서 국가간 비교 분석을 하여 한국 치과위생사가 구강건강 관리 전문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정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 캐나다의 치과위생사 정의, 법적인 업무 범위와 역량을 비교 분석하였다. 미국과 캐나다는 각국의 치과위생사 홈페이지에 자료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어 접근이 비교적 용이하며,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영역과 역량이 국가적으로 잘 정립되어 있어 비교 대상 국가로 선정하였다. 그 후 각 국가별 치과위생사 정의를 비교하였고, 업무와 역량을 파악한 후, 각 항목별 차이점을 정리하였다.

2.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자료 수집은 치과위생사의 정의의 경우 각 국가의 치과위생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집하였고[9-11], 법적 업무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3], Thomson Reuters의 State Government Sites[12], Oral health workforce research center[13], 캐나다치과위생사협회[14] 등의 공식 자료를 통해 수집하였다. 치과위생사의 역량에 대한 자료는 각국의 치과위생사협회 홈페이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위생(학)과교수협의회 등에서 발간된 연구보고서 및 각종 학술지, 정부간행물 등을 활용하였다[5-8,15,16].

III. 연구결과

1. 각 국가별 치과위생사의 정의

치과위생사의 정의는 한국의 경우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 ‘구강보건교육, 예방치과처치, 치과진료협조 및 경영관리를 지원하며,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의 일익을 담당하는 전문 직업인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9]. 미국은 ‘임상가, 교육자, 중재자, 관리자, 주도자 및 연구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치과위생사 협회에서 정의하고 있으며[10], 캐나다 치과위생사 협회는 ‘1차 구강보건전문가’라고 정의하였다[11]. 세계치과위생사연맹(국제치과위생사연맹)에서는 ‘임상서비스와 교육, 상담계획의 수립, 평가와 함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치료를 담당하며, 건강의 총체적 증진을 위해 봉사하는 보건전문가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각 국가별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는 한국의 경우 2018년 12월 18일에 신설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3] 제2조제1항 별표1에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에 관한 업무(교정용호선의 장착·제거, 불소도포,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 임시충전, 임시 부착물의 장착, 부착물의 제거, 치석 등 침착물의 제거, 치아 본뜨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에 관한 업무’로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법적으로 제시된 모든 업무 수행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호에 의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미국은 각 주마다 책임에 관한 자체 규정이 있어 주별로 차이가 있으나[12-13], 대부분의 주에서 스케일링, 치주소파술, 치근활택술, 구강 방사선 촬영, 불소도포, 치면열구전색 등의 업무를 치과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단독으로 수행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 밖에 치위생 진단, 계획 평가 및 문서화, 충전물 수복, 아말감 수복·조각, 유치 발치, 임시 치아 제작, 국소 마취, 레이저 치료, 국소적 약물을 처방할 수 있는 권한 등의 업무도 명시되어 있다(Table 1). 캐나다의 경우도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가 각 주마다 상이하였다[14]. 모든 주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Table 1> Legal tasks of dental hygienist by United States of America

TASKS	ALA BAMA	ALASKA	ARIZONA	ARKANSAS	CALIFORNIA	COLORADO	CONNECTICUT	DELAWARE	DISTRICT OF COLUMBIA	FLORIDA	GEOORGIA	HAWAII	IDAHO	ILLINOIS	INDIANA	IOWA	KANSAS	KENTUCKY	LOUISIANA	MAINE	MARYLAND	MASSACHUSETTS	MICHIGAN	MINNESOTA	MISSISSIPPI	
Dental hygiene diagnosis	0	0		0	0	0	0			0	0		0		0		0			0	0	0				
Dental hygiene treatment planning/ plan of care	0	0		0	0	0	0					0	0							0				0		
Patient assessment, evaluation, and documentation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Place sealants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Place atraumatic/ interim therapeutic restorations	0		0						0																	
Perform basic/ primary restorations with training and credential		0					0						0													0
Place and carve amalgam		0							0				0													0
Simple extractions of primary teeth with training and credential	0	0		0	0	0	0				0	0	0				0			0						0
Fabricate provisional crowns	0			0					0		0	0										0				
Place stainless steel crowns with training and credential	0		0		0			0			0	0										0				0
Able to provide local anesthesia w/o direct supervision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Able to perform scaling and root planing w/o direct supervision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Able to provide X-rays under general supervision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Permitted to use lasers for debridement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Identify and manage medical emergencies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Permitted to prescribe fluoride /topical medications /cortexamine	0									0																0

TASKS	ALA BAMA	ALAS KA	ARIZ ONA	ARK AS	CALIF FORNIA	COL ORA DO	CON NECT ICUT	DEL AWA RE	DISTR ICT OF COLU MBIA	FLOR IDA	GEO RGIA	HAW AII	IDAH O	ILLIN OIS	INDI ANA	IOW A	KAN SAS	KEN TUCKY	LOU ISIANA	MAI NE	MAR YLAND	MAS SACHU SETTS	MICH IGAN	MIN NESO TATA	MISS SSIPP I
Provide care of patients across the age continuum																									0
Initiate consultations and referrals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TASKS	MISS OURI	MON TANA	NEB RAS KA	NEV ADA	NEW HAM PSHIRE	NEW JERS EY	NEW MEXI CO	NEW YORK	NOR TH CAR OLIN A	NOR TH CAR OLIN A	OHIO	OKL AHO MA	ORE GON	PEN NSY LVA NIA	RHO DE ISLA ND	SOU TH CAR OLIN A	SOU TH CAR OLIN A	TEN NESS EE	TEX AS	UTA H	VER MONT	VIRG INIA	WAS HING TON	WES T VIRG INIA	WYOMING
Dental hygiene diagnosis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Dental hygiene treatment planning/ plan of care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Patient assessment, evaluation, and documentation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Place sealants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Place atraumatic/ interim therapeutic restorations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Perform basic/ primary restorations with training and credential		0						0			0						0				0				0
Place and carve amalgam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Simple extractions of primary teeth with training and credential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Fabricate provisional crowns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Place stainless steel crowns with training and credential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Able to provide local anesthesia w/o direct supervision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Able to perform scaling and root planning w/o direct supervision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TASKS	WYO MIN G	WISCONSIN	WEST VIRGINIA	WASHINGTON	VIRGINIA	VERMONT	UTAH	TEXAS	TENNESSEE	SOUTH DAKOTA	SOUTH CAROLINA	RHODE ISLAND	PENNSYLVANIA	OREGON	OKLAHOMA	OHIO	NORTH DAKOTA	NORTH CAROLINA	NEW YORK	NEW MEXICO	NEW JERSEY	NEW HAMPSHIRE	NEVADA	NEBRASKA	MONTEANA	MISSOURI	
Able to provide X-rays under general supervisi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Permitted to use lasers for debridement	○	○	○	○	○	○	○	○	○	○	○	○	○	○	○	○	○	○	○	○	○	○	○	○	○	○	○
Identify and manage medical emergencies	○	○	○	○	○	○	○	○	○	○	○	○	○	○	○	○	○	○	○	○	○	○	○	○	○	○	○
Permitted to prescribe fluoride /topical medications /corhexamine	○	○	○	○	○	○	○	○	○	○	○	○	○	○	○	○	○	○	○	○	○	○	○	○	○	○	○
Provide care of patients across the age continuum	○	○	○	○	○	○	○	○	○	○	○	○	○	○	○	○	○	○	○	○	○	○	○	○	○	○	○
Initiate consultations and referrals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있는 업무는 치위생 검사, 진단, 치위생 진단 목적의 방사선 사진 촬영 및 판독, 미생물 및 조직 검사, 스케일링, 치근면활택술, 착색제거, 치은연하 세정, 치주소파술, 구강 점막 질환 관리, 치면 열구전색, 항균제 도포, 불소도포, 수복물 연마, 마우스 가드 제작, 보철 제거, 지각과민치, 치아 미백, 임시 치아 장착, 치수 생활력 검사, 의치 및 가철성 보철물 잔사 및 착색 제거, 구강관리, 구강 건강과 관련된 식이 상담, 금연, 자가구강관리, 고객 관리 등이며, 대다수의 진료가 치과의사의 감독 없이 치과위생사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 밖에 구강근기능요법, 국소 마취, 아말감 수복, 복합레진 수복, 임시 수복 재료 충전, 처방 권한 등은 각 주별로 차이를 보였다(Table 2).

3. 국가별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 비교

각 국가별 치과위생사의 법적인 업무 비교는 진료협조, 구강관리, 구강보건교육 등의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하였으며, 또한 관련법과 업무 권한도 각 국가별로 비교하였다. 진료협조 부분에서 한국은 9개 영역으로 미국과 캐나다에 비해 법적 업무 범위가 현저하게 협소함을 알 수 있었다. 구강관리 부분은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치위생검사와 진단, 치석제거술 및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들을 시행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반면 한국은 치석 및 침착물 제거만 가능하고 치과위생사가 직접 검사하고 진단할 수 없으며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도 시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불소도포는 3개국 모두 명시되어 있으나 치면열구전색은 미국과 캐나다와는 다르게 한국은 기술되어 있지 않다. 구강보건교육에 관한 내용도 한국은 제외되어 있다. 또한 치과위생사의 업무 관련법은 한국의 경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나, 미국은 주법, 캐나다는 치과위생사법에 명시되어 있다. 업무 권한에 있어서도 한국은 모든 업무를 치과의사의 지도감독 아래에서만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미국과 캐나다는 직접 판단해서 수행할 수 있는 직접감독권과 함께 보장 받을 수 있는 자율적 영역이 있다(Table 3).

4. 국가별 치과위생사의 역량 비교

치과위생사의 역량은 한국의 경우 최근 보고서[8]에는 학문지식의 통합, 전문성, 의사소통, 협력, 건강증진, 구강보건교육, 환자관리, 경영의 8개 영역과 함께 57가지의 세부 역량이 제시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는 치과위생교육협회[15]에서 핵심 역량,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지역사회 참여, 환자관리, 전문가로서의 성장 및 자기 발전의 5가지 영역과 이에 따른 세부역량을 제시하

<Table 2> Legal tasks of dental hygienist by Canada

Tasks	AB	BC	MB	NB	NL	NT	NS	NU	ON	PE	QC	SK	YT
Complete dental hygiene examination and diagnosis: Dental hygiene examination : Dentition, dentulous, Periodontal, Case presentation /Treatment planning	O	O	O	O	O	O	O	O	O	O	O	O	O
Radiographs and photographs, Including interpretation for purposes of dental hygiene diagnosis : Intraoral - Bitewing, Periapical, Full Mouth Series, Panoramic, Cephalometric, Duplication of Radiographs, Photographs for purposes of dental hygiene diagnosis	O	O	O	O	O	O	O	O	O	O	O	O	O
Microbiological and histological tests - Caries susceptibility test (technical procedure only), Periodontal disease activity test, Oral cancer testing (technical procedure only)	O	O	O	O	O	O	O	O	O	O	O	O	O
Study models (for diagnostic purposes)	O	O	O	O	O	O	O	O	O	O	O	O	O
Periodontal treatment : scaling and/or sub gingival deplaquing, Root planing, Stain removal, Sub gingival periodontal irrigation, Management of oral mucosal disorders, Management of oral manifestations of systemic disease, Gingival curettage, Chemotherapeutic/ photo disinfection therapy	O	O	O	O	O	O	O	O	O	O	O	O	O
Additional oral health services: Sealants, Application of anticariogenic/antimicrobial agents, Fluoride applications, Finishing restorations, Fabrication of sports guards, Labelling of removable prosthesis, Desensitization of teeth, whitening of vital teeth, Placement of preventive, Therapeutic and/or temporary restorations, Temporary recementation, Pulp vitality testing, Dentures/removable oral prosthesis, Debridement, and Stain removal	O	O	O	O	O	O	O	O	O	O	O	O	O
Oral pain management : Electronic dental anesthesia, Acupuncture	O	O	O	O	O	O	O	O	O	O	O	O	O
Local anesthesia	O	O	O	O	O		O					O	O
Nitrous oxide oxygen conscious sedation	O				O								
Education and habit modificaion: Counselling for diet as related to oral health · Tobacco use cessation · Oral self-examination, Instruction in oral self-care, Group presentations	O	O	O	O	O	O	O	O	O	O	O	O	O
Orofacial myofunctional therapy	O						O					O	
Periodontal outcome evaluation	O	O	O	O	O	O	O	O	O	O	O	O	O
Professional communications/ Case presentation	O	O	O	O	O	O	O	O	O	O	O	O	O
Mobile dental hygiene services	O	O	O	O	O	O	O	O	O	O	O	O	O
Management of exceptional client	O	O	O	O	O	O	O	O	O	O	O	O	O
Laboratory and expense services	O	O	O	O	O	O	O	O	O	O	O	O	O
Orthodontic procedures in conjunction with a dentist	O	O	O	O	O		O		O	O	O	O	
Placement of a permanent restorative material* e.g. Amalgam/composite resin; adapt and cement stainless steel crown in conjunction with a dentist	O		O		O		O		O		O	O	
Placement of a temporary restorative material independent of a dentist	O	O			O				O			O	
Order radiographs	O			O			O					O	
Prescribing authority	O												

Alberta; AB, British Columbia; BC, Manitoba; MB, New Brunswick; NB, Newfoundland and Labrador; NL, Northwest Territories; NT, Nova Scotia; NS, Nunavut; NU, Ontario; ON, Prince Edward Island; PE, Quebec; QC, Saskatchewan; SK, Yukon; YT

<Table 3> Comparing the legal tasks of dental hygienists by country

Legal tasks · related laws · authority tasks	Korea	America	Canada
Clinical Service	<p>Temporary restoration, Place temporary attachments, Removal of deposits, Tooth impression, Installation and removal of orthodontic arch wire, Intra oral diagnostic radiography</p>	<p>Place sealants Place atraumatic/ interim therapeutic restorations Perform basic/primary restorations with training and credential Place and carve amalgam Simple extractions of primary teeth with training and credential Fabricate provisional crowns Place stainless steel crowns with training and credential Permitted to use lasers for debridement Identify and manage medical emergencies Permitted to prescribe fluoride /topical medications/corhexamine Initiate consultations and referrals</p> <p>Direct performance : Able to provide local anesthesia w/o direct supervision Able to perform scaling and root planing w/o direct supervision Able to provide X-rays under general supervision</p>	<p>Radiographs and photographs, Including interpretation for purposes of dental hygiene diagnosis : Intraoral - Bitewing, Periapical, Full Mouth Series, Panoramic, Cephalometric, Duplication of Radiographs Periodontal treatment : scaling and/or sub gingival deplaquing, Root planing, Stain removal, Sub gingival periodontal irrigation Management of oral mucosal disorders Management of oral manifestations of systemic disease Gingival curettage, Chemotherapeutic/ photo disinfection therapy Additional oral health services: Sealants Application of anticariogenic/ antimicrobial agents Fluoride applications Finishing restorations, Fabrication of sports guards, Labelling of removable prosthesis, Desensitization of teeth, whitening of vital teeth, Placement of preventive, Therapeutic and/or temporary restorations Temporary recementation, Pulp vitality testing, Dentures/removable oral prosthesis, Debridement, and Stain removal Oral pain management : Electronic dental anesthesia, Acupuncture Local anesthesia Nitrous oxide oxygen conscious sedation Placement of a permanent restorative material* e.g. Amalgam/composite resin; adapt and cement stainless steel crown in conjunction with a dentist Placement of a temporary restorative material independent of a dentist Orthodontic procedures in conjunction with a dentist</p> <p>Direct performance : Order radiographs Prescribing authority</p>
Oral care	<p>Removal of deposits such as calculus, Fluorine application, Prevention and hygiene of teeth and oral diseases</p>	<p>Dental hygiene diagnosis Dental hygiene treatment planning/ plan of care Patient assessment, evaluation, and documentation</p>	<p>Complete dental hygiene examination and diagnosis: Dentition, dentulous, Periodontal, Case presentation/ Treatment planning, Study models(for diagnostic purposes) Microbiological and histological tests - Caries susceptibility test (technical procedure only), Periodontal disease activity test, Oral cancer testing (technical procedure only),</p>

Legal tasks · related laws · authority tasks	Korea	America	Canada
			Orofacial myofunctional therapy Periodontal outcome evaluation Professional communications/ Case presentation Mobile dental hygiene services
Oral health education		Provide care of patients across the age continuum	Education and habit modification : Counselling for diet as related to oral health · Tobacco use cessation · Oral self-examination, Instruction in oral self-care, Group presentations
Etc			Management of exceptional client Laboratory and expense services
Related Laws	Medical technicians, Etc, Act	State law	State law - Dental hygiene law
Authority tasks	Supervised type	Direct supervision General supervision	Autonomous type Supervised type

<Table 4> Competency comparison of dental hygienist by country

Content	Korea	America	Canada
Competencies	Integration of knowledge of discipline		Integration of knowledge of discipline
	Professionalism Communication Collaboration	Core competencies	Core competencies Professionalism Communication Collaboration Coordination Research Use Leadership
	Health promotion	Health Promotion	Dental hygiene Service competencies Health promotion activities, Initiatives, and programs
		Disease Prevention	Disease prevention activities, Initiatives, and programs
	Oral health education		Oral health education advocacy
		Community involvement	Policy use
	Patient care; clinical therapy	Patient care	Clinical therapy
		Professional growth and development	
	Management; practice management		

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는[16] 훈련된 역량의 지식, 핵심 역량, 치위생 서비스 등의 내용으로 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각 국가별 치과위생사의 역량을 비교한 결과 핵심 역량

(전문성, 의사소통, 협력)과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환자관리에 대한 내용은 한국과 미국, 캐나다 세 국가 모두 공통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지역사회 참여, 정책 활용 등은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명시되어 있고, 경영과 치과 병의원관리에 관한 역량은 한국에서만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성장 및 자기 발전은 미국에서만 명시되어 있다(Table 4).

IV. 고찰

서론에서 밝혔듯이, 최근 치료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의료계의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치과위생사들의 업무도 진료협조에서 구강관리로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시점이다. 시대에 적합한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제도화된 법적 업무와 표준화된 역량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한국, 미국, 캐나다 간 치과위생사의 법적인 역할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과위생사의 법적인 역할 변화와 역량 개발 방안을 중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치과위생사 정의는 한국과 미국, 캐나다 모두 예방치과진료, 구강보건교육, 계속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전문가라고 정의하고 있어 국가별로 큰 차이는 없었다. 다만 미국은 추가로 중재자, 관리자, 주도자 및 연구자라고 명시되어 있어 한국보다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4]에 따르면 치과위생사는 구강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과 예방 진료 제공자로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 한국의 치과위생사 정의는 이러한 도입 취지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법적으로 명시된 치과위생사의 업무에 있어 한국은 미국 및 캐나다와 차이가 존재한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는 치과위생사의 법적인 업무가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특히 교육과 예방에 관련한 업무들(구강악습관 수정, 식이상담, 금연교육, 구강근기능요법, 우식활성검사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치위생 진단 업무가 치과위생사의 업무에 포함되어 있다(Table 1, Table 2). 반면 한국의 경우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로 예방과 구강관리에 관한 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치과위생사는 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2018년 시행령이 전문 개정되었으나, 개정된 업무 역시 기존의 법적 업무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치과위생사의 업무권한을 비교해보면, 한국의 경우 치과위생사의 지도 감독 아래에서만 모든 업무 수행을 할 수 있으나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단독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치과위생사가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가 9개 분야로 국한되어 있어 임상현장에서의 실제 수행업무와 법적인 업무와의 괴리로 인해 원활한 구강진료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요약하면 현재 한국의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그 범위가 협소하고 권한이 제한되어 있어, 업무범위에 관한 행정처분 발생, 직무영역 간의 끊임없는 논란을 야기하는 등 여러 문제들의 원인이 되고 있다[17-19]. 치과위생사들의 업무가 진료협조에서 구강관리로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시점에서, 이는 치과위생사의 법적인 업무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역량개발 측면에서 전면적인 변화가 시급함을 의미한다.

법적인 업무 측면에서는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와 유사하게 업무의 범위 및 권한이 확장되어야 하며, 업무 역시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특히 구강질환 예방과 교육 및 상담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도록 법적인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치과위생사법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는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하에 정의되어 있어 업무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없는 실정이다. 한국과는 달리 미국은 주법, 캐나다는 주법 내에 별도의 치과위생사법이 존재한다(Table 3). 나아가 치과관련 직무영역간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며, 법적 업무 한계로 인한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최대의 실효성을 얻을 수 있는 법제화를 위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법적 업무가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개발하지 못하면 개정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없음이 자명하다. 한국, 미국, 캐나다 3개국에서 치과위생사의 역량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비교한 결과, 큰 방향성이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미국은 일차예방진료의 제공뿐만 아니라 보건정책, 연구, 의료관리 등의 다양한 건강분야에서 치과위생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협력, 리더십 등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한국은 학문지식의 통합, 전문성, 의사소통, 협력, 건강증진, 구강보건교육, 환자관리·임상처치, 경영·치과 병의원관리 등의 8가지 영역이 제시되어 있다[12-15]. 다만 한국은 구강보건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되어 있는 반면, 경영과 병원관리 역량이 새로이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 미국 및 캐나다와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다.

역량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역량을 정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에서는 이러한 역량을 기르기 위한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역량을 개발하고 이에 따라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16,17]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치과위생사협회 등 단체에서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치과위생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개발하였으나, 그 결과가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 명시적으로 공표되지 않아 실제 교육기관에서 적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법적업무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요구된다. 첫째, 표준화된 치과위생사 역량을 공표하고, 각 교육기관에서는 이에 기반한 인증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해야 한다. 이는 미래지향적인 실무중심의 틀로 바꾸기 위한 과정으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 역시 함께 요구된다. 둘째, 역량개발 교육은 법적업무의 개정과 맞닿아 있는 문제로, 법적 개정이 선결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 연구[20]에서도 치과위생사의 업무영역 중 경영지원관리역량이 직무역량으로 보고되었으나 이에 대한 법적업무는 명시되지 않아 역량 강화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법률적 개정과 함께 치과위생사 역량의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역량에 따른 실질적인 교육도 함께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본 고찰에서 제시한 내용은 북미 (미국 및 캐나다)와 한국 3개국에 기반한 것으로 한계점을 가진다. 유럽 등을 포함한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는 자료수집만으로 이루어졌으나 추후에는 실질적인 설문과 패널토의 등을 통한 다양한 연구방법을 이용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 결론

한국, 미국, 캐나다를 중심으로 국가 간 치과위생사의 업무 및 역량을 비교해보기 위해, 각 국가별 치과위생사의 정의와 법적인 업무 및 역량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한국의 치과위생사 정의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제시한 정의와 유사하였다. 다만 미국의 경우는 치과위생사의 다양한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2. 한국 치과위생사의 법적인 업무는 미국 및 캐나다와 여러 면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첫째, 미국과 캐나다는 달리 한국은 예방과 구강관리에 관한 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치과위생사는 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둘째, 한국의 경우 치과의사의 지도 감독 아래에서만 업무 수행을 할 수 있으나,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단독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3. 한국 치과위생사의 역량 정의는 미국 및 캐나다와 큰 틀에서는 유사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치과위생사 역량은 공식적으로 공표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미국과 캐나다와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법률적 개정과 함께 치과위생사 역량의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1. Cho MJ: A Study on the Performance of Incremental Dental Care. J Korean Acad Dental Hygiene Education 9(1): 153-168, 2009.
2. Chung WG, Son AR, Jung HR, et al.: Cognition and perception of community members about dental hygienist's job. Korean Acad Dental Hygiene 6(4):403-417, 2006.
3. <http://law.go.kr/lsInfoP.do?lsiSeq=205867&efYd=20181220#0000>
4. Fones AC: Mouth hygiene, a course of instruction for dental hygienists; a text book containing the fundamentals for prophylactic operators, 1st ed. Philadelphia: Lea & Febiger, 1916.
5. <http://www.alio.go.kr/popSusiViewB1040.do?seq=2015042800406196>
6. <http://www.kadhp.org/kadhp/board.php?board=kkkdata&no=&command=list&page=2>
7. <http://www.kdha.or.kr/news/ReportView.aspx>
8. <http://www.alio.go.kr/informationResearchView.do?seq=2330954>
9. <http://www.kdha.or.kr/introduce/dentalhygienist.aspx>
10. <http://www.adha.org/scope-of-practice>.
11. https://www.cdha.ca/pdfs/Profession/Resources/Definition_Scope_public.pdf
12. <https://govt.westlaw.com/SiteList>
13. http://www.chwsny.org/wp-content/uploads/2016/12/OHW_RC_Dental_Hygiene_Scope_of_Practice_2016.pdf
14. https://files.cdha.ca/profession/Reg_Chart_May2015.pdf
15. American dental education association competencies for entry into the allied dental professions (As approved by the 2011 ADEA House of Delegates) J Dent Educ 81(7): 853-860, 2017.
16. Canadian competencies for baccalaureate dental hygiene programs 2015. Adapted for the UBC Dental Hygiene

- Degree Program. The Canadian dental hygienist association.
17. <http://www.kdha.or.kr/community/boardoperator.aspx>
18. Lee SJ, Cho HY: Work reality of dental assistant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6(4):153-159. <https://doi.org/10.15207/JKCS.2015.6.4.153>
19. Kim YS, Shin MW: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and Weight of Dental Hygienists' Works, J Korean Acad Dental Hygiene Education 8(3):161-175, 2008.
20. Park JH, Lee YH: Influence of Dental Hygienists' Core Competencies on Job Performance J Dent Hyg Sci 17(2): 142-149, 2017.